

2008 공통교재

복식부기



시·도 공무원교육원

복식부기

시·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목 차

제1장 문제의 제기	3
제2장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6
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6
2. 발생주의의 채택	13
3.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의 구분	15
4. 財務諸表와 부속명세서 및 주식(부기사항)	16
5. 재정상태보고서	20
6. 재정운영보고서	34
제3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40
1. 지방재정정보의 다양화 및 구체화	40
2. 공무원의 원가의식 함양 등 경영적 감각 양성	49
3.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와 주민참여 촉진	51
제4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과정의 장애요인	53
1. 도입비용 문제	53
2. 도입에 대한 저항	54
3. 취약한 전문성 문제	54
4. 자산평가의 어려움	55
5. 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우려	55

제5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발전방안	56
1. 공감대 형성 및 전문인력 확보 노력	56
2. 전산시스템 운용능력 제고	58
3.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	59
4. 복식부기제도 도입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활용	59
제6장 결 론	60
참고문헌	61
(부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62

제1장 문제의 제기

'90년대 이후 선진 주요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기본전략 및 핵심내용은 결과중심의 관리(results-oriented management)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계획)만을重視하는 관행으로부터 예산 못지않게 결산(결과, 성과)도重視하는 관행으로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¹⁾.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복식부기 도입은 현금주의방식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일대 변혁인데, 공공부문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이 유효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공공회계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복식부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에서 명시적인 도입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초 부천시, 강남구 등에서 복기부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007년 결산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할 예정이다.

2005년 8월 4일에 관보에 공포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53조(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용결과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현행 단식부기에 의한 결산보고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재무보고서

1) 대학생 자녀의 수강신청내역(사전적)과 성적표(사후적)중 부모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모두 중요하겠지만, 결과인 성적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재무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법률 제60조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1) 기업형 회계방식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회계책임의 적절한 이행 및 그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식(註釋)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함

3)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되고 총액을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하도록 함

4) 재정운영보고서 :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함

5) 현금흐름보고서 :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줌

6) 자산의 평가기준 :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되,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재정상태보고서의 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통상 회계는 記帳方式에 따라 단식부기회계와 복식부기회계로 구분되고, 거래인식기준에 따라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로 구분되며, 회계처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무회계(재무상태, 운영성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와 관리회계(원가관리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한 중장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회계는 기장방식과 거래인식에 있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현금주의 단식부기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재정행위를 단순한 측면(단면,單式)인 돈(현금)의 出納(수입·지출)으로만 파악하는 방식이다.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아닌 일정한 기록원리가 없이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다. 가게부나 작은 규모의 소매점 등에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어떤 상태(재산과 부채 등)에 있는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 발생주의 복식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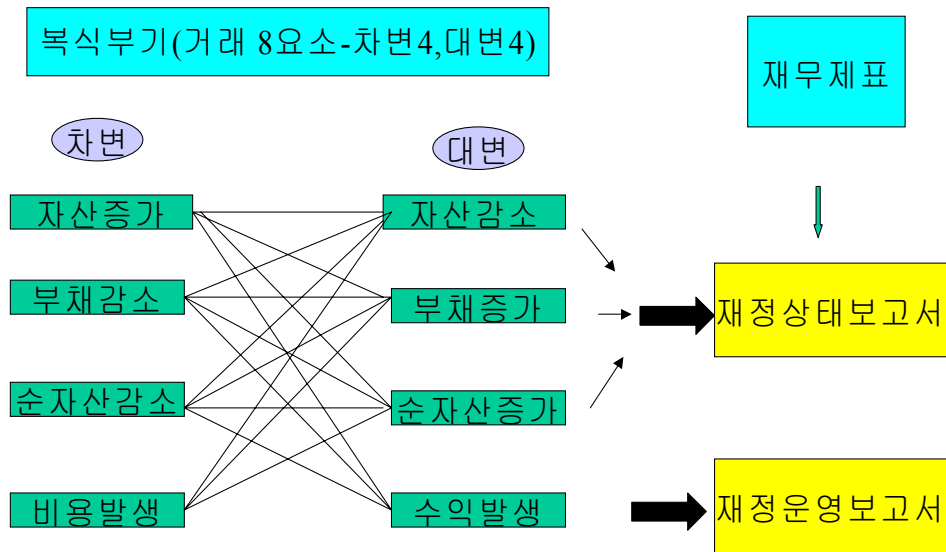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거래 8요소)를 회계장부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나누어 발생주의에 따라 이중(양면·複式) 기록하는 장부기재방식이다.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²⁾의 원리에 따라 원편(차변)과 오른편(대변)에 체계적으로 기록되는 절차를 분개라 하는데, 분개는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분개는 그 방식에 따라 (수동)분개와 자동분개로 구분된다. 자동분개는 전산프로그램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의 회계처리에 따른 수고와 어려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은 자동분개방식이다. 복식부기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게 된다. 특정기간동안의 회계처리 내역을 합칠 경우에도 전체의 경우 모두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 부르는데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복식부기회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오류발생여부의 자기검증 기능이 존재하게 된다.

거래 8요소는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나누어진다(‘그물망’). 차변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다. 대변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그 결과 ①자산·부채·순자산을 사용하여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소위 ‘재정상태보고서’)하고, ②수익·비용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소위 ‘재정운영보고서’)를 표시한다.

2) 흔히 서양부기라 하는 복식부기는 이탈리아의 각 도시에서 상업의 발달에 따라 대체로 13-14세기 경에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성부기가 서양부기보다 200년이 앞선다는 주장이 있다. 개성(송도,개경,송악)은 옛날부터 唐·宋은 물론 일본, 남해제국, 나아가 아라비아까지도 활발한 해상무역활동을 전개했던 지역으로서 ‘개성상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들이 고려왕조를 탄생시킨 기반세력이 되었다. 개성부기는 전국적인 상권을 오랜 기간 장악했던 이들 개성상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개성부기의 본래 이름은 「사개치부법(四介置簿法)」이다. 서양부기가 모든 거래를 대인간의 貸借관계로 표현하려 함으로써 차변과 대변의 둘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개성부기는 모든 交換을 去來로 파악하여 가는 것(去)과 오는 것(來)의 둘과 거래마다 반드시 주고받는 사람을 생각하여 주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둘로 합쳐 四計(四介)로 보는 점이 다르다. 복식부기의 이중성과 자본주 관계까지 명백하게 나타낸 개성부기방식은 서양부기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土農工商’이라하여 상업을 천시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와 보급이 제대로 안되고 사라진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 핵심 : 각 地自體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 재정상태와 수익, 비용 등 재정성과의 측정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즉 복식부기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각종 財務諸表(재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분개사례(예시)]

I. 자산 취득

- 집기·비품 20만원 구입, 검수직후
(차변)집기비품 20만원 (대변)미지급금 20만원
- 500억원 투입하여 청사건물 신축
(차변)건물 500억원 (대변)현금 500억원

Ⅲ. 부채 발생 및 상환

- 채권 발행하여 300억원 현금수입
(차변)현금 300억원 (대변)지방채 300억원
- 미지급금 20만원 현금지급
(차변)미지급금 20만원 (대변)현금 20만원
- 지방채 20억원 年利 5% 이자지급
(차변)지급이자 1억원 (대변)현금 1억원

Ⅳ. 비용 발생

- 직원A에게 월급 2백만원 지급
(차변)인건비 2백만원 (대변)현금 2백만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지급

① 급여지급일(검수시점)

(차변)기본급 350만원 (대변)미지급비용 325만원
소득세예수금등 25만원

②지급명령시

(차변)미지급비용 325만원 (대변)현금 325만원

③원천징수한 소득세예수금등 납부시

(차변)소득세예수금등 25만원 (대변)현금 25만원

*연말 결산시 발생주의에 의거 연말 현재의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였다.

(차변)퇴직급여(비용과목) 4500만원 (대변)퇴직급여충당부채 4500만원

*퇴직금지급시(지급명령시)

(차변)퇴직급여충당부채(부채과목) 500만원 (대변)현금 500만원

○ 건물감가상각 1억원

(차변)감가상각비 1억원 (대변)감가상각누계액 1억원

V. 수익 발생

○ 재산세 징수시(보통징수시)

①부과징수시(징수결의서 작성시)

(차변)미수재산세 20만원 (대변)재산세수익 20만원

②납세자가 기한내 납부시(징수부에 수납액 기재시)

(차변)현금 20만원 (대변)미수재산세 20만원

③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부 기재시)

회계처리 없음. 부과시부터 미수채권(체납채권 포함)으로 관리

④기한경과 후 재차 부과고지서 발행시

(차변)미수재산세 xxx (대변)재산세수익 xxx

⑤납세자가 기한경과후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시

(차변)현금 xxx (대변)미수재산세 xxx
재산세수익 xxx

○ 물납시

①물납허가시: 회계처리 없음

②물납시(징수부에 수납액 기재시)

(차변)○○물납자산 xxx (대변)미수재산세 xxx

충당·사용'(과거 '繰上充用' 용어해당)이 없다.³⁾ 예컨대 복식부기회계는 부과 고지된 금액 전체를 지방세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중 현금으로 수납된 부분과 아직 회수되지 않아 미수채권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보여 줌으로써 실제로 유입된 현금과 향후 관리해야 할 미수채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收入計上時點** :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현금이 수납된 단계에서 수입으로 계상되는데 대해서,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債權확정(발생)時點, 즉 「징수결의時點」, 「調定(조사결정)時點」에서 수입 계상
- **支出計上時點** : 물품구입에 있어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 지출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되지만,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채무확정(발생)時點, 즉 「물품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검사·검수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된다. 따라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경리관) → 검사·검수(검사공무원) → 자금배정(자금관리담당과장) → 대가청구(계약자) → 지출의 결정(지출원) → 지급명령발행(지출원) → 지급(출납원·금고) 등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복식부기방식에서는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등에 대해 건건이 인식하지 않고, 검사·검수여부에 따라 확일적으로 처리한다(미지급금 등).
-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처리문제** : 예산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과 세출에 해당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만을 세입세출결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 세출과 관련이 없는 현금의 유출입거래와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제외되고 있

3) 출납폐쇄기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례로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중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다. 그러나 복식부기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나 세입세출과 관련없는 현금유출입거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회계적 거래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 세입세출과는 무관한 거래를 복식부기회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복식부기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 위탁 징수하는 국세 및 도세의 출납
-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의 예수금
- 자산의 취득형태 중 기부채납, 양여, 누락재산의 발굴, 관리전환
- 자산의 처분형태 중 관리전환, 양여, 현물출자
- 불납결손처분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 외화환산

3.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의 구분

자본(투자)거래와 경상(수익·비용)거래가 혼동 처리되면 재정상태와 재정성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본거래는 주로 재정상태보고서와 연계되고, 경상거래는 주로 재정운영보고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경상(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다. 경상거래인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은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 과목에 연결되며 예컨대 페인트칠, 전구교체, 깨진 유리의 교체 등 유형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현상유지적 지출이다. 자본거래인 자본적(투자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미래기간의 수익발생을 위한 지출로서 당기 재산내용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과목에 연결되며 예컨대 엘리베이터설치, 비상계단설치 등 당해 유

형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52조 참조).

4. 財務諸表와 부속명세서 및 주석(부기사항)

가.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가 특히 중요하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년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사업연도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정부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유사 개념이다. 스톡(stock)정보로서 '時點'의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재정상태보고서 등식은 (자산=부채+순자산)이다.

□ 재정운영보고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收益 및 費用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유사

개념이다. 플로(flow)정보로서 '期間'의 재정성과를 나타낸다.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운영차액으로 표시한다.

- 현금흐름보고서(Statement of Cash Flows) :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①경상활동(주로 수익·비용 변동), ②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③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재무보고서로,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1항)에 의하면 현금흐름보고서의 재무제표 계상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의 어려움, 세입세출결산서의 관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적용 및 통합문제 등을 고려하여 2007년에는 적용을 유예하고 추후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나. 결산총평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서문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 주요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자료를 말한다.

다. 주석

재무제표에 대한 註釋은 재무보고서의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재무제표의 각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계정과목의 정의 및 재무보고실체의 중요한 회계처리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첨부자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재정운영실적 그리고 기타 재무보고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석의 형식으로 해당 재무제표에 부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

□ 예시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 ②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 ③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 ④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⑤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 ⑥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 ⑦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①예산결산요약표 ②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③관리책임자산 ④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다.

마.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침에는 ①미수세금명세서 ②미수세외수입금명세서 ③대여금명세서 ④전출금명세서 ⑤장기투자증권명세서 ⑥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⑦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⑧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⑨감가상각명세서 ⑩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⑪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명세서 등을 부속명세서로 규정하고 있다.

바. 주요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주요 선진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도입기간이 평균 10년 내외이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단계적 도입은 영국을 비롯한 영미계통의 국가와 프랑스, 스페인 등 대륙계통의 국가들의 공통된 접근방법이다. <표 1>에서 기본재무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장표와 ② 일정기간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장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비교

구분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기본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보고서 · 운영(활동)보고서 · 예산집행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성과표 · 재정상태표 · 현금흐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성과보고서(손익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수입지출보고서 · 현금흐름표

5.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회계년도末 또는 初)에 있어서의 재무상태 즉 모든 자산·부채 및 순자산(‘자본’)의 관계를 나타낸다. 주민공유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각종 재산내역은 어떠한가하는 자산(asset)정보와 빚은 얼마나 쌓여있는가 하는 부채(liability)정보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순자산정보 등으로 나뉜다. 時點간의 스톡정보를 비교하게 되면 자산변동, 부채변동, 순자산변동과 같은 재무상태의 변동상황을 알 수 있다. 재정상태보고서 등식은 (자산=부채+순자산)이다. 자산은 차변에 표시되고, 부채·순자산은 대변에 표시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토지·건물·현금 등 자금의 운용형태와 부채, 순자산 등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운용의 건전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우측(대변)에 자금조달의 원천을 나타내고, 좌측(차변)이 그 운용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재정상태보고서(자산, 부채 등)의 작성기준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2> X市 재정상태보고서(2007년도말)

(차변)

(대변)

자산	2007	2006	부채 및 순자산	2007	2006
유동자산			유동부채		
투자자산			장기차입부채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자산			순자산		

가. 자산

1) 자산의 정의

資産(assets)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현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칭한다. 자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 또는 물품보다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정의 속에는 현금뿐 아니라 채권(미수세금, 미수금 등), 융자금(대부자산), 토지·건물·비품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인프라자산(도로, 공원, 상수시설, 배수시설 등)까지도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자산(infrastructure asset)은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자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고유한 자산에 속한다.

2) 자산의 인식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3) 자산의 평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등 자산의 평가는 측정가능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자산의 가액은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주의에 의해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역사적 원가란 자산을 취득할 때 이미 발생한 원가 또는

취득시점에서 소요된 화폐액이다. 취득에 소요된 취득부대비용(등기비, 수수료 등)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그러나 복식부기 최초 도입시 역사적 원가를 알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어쩔수 없이 시가의 개념이 도입된 자산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기초자산을 확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산교환(예컨대 자치단체간 토지교환 등), 기부채납, 관리전환, 누락재산 발굴에 의한 무상 취득 등으로 인한 자산의 가액은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예컨대 자산교환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복식부기도입 경우에는 예산외 거래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완공 후 기부채납과 무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채납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복식부기가 도입된 후에는 예산외의 거래로 인식되어야 하며 복식부기 기록대상이 된다.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미수세금 등의 미수채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수채권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대여금, 융자금 등도 이를 준용한다. 산출된 대손상각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

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자산은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산의 처분 경우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여는 사법상의 증여계약으로서 양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절한 비용(기부금 등)과목으로 처리한다.

토지의 가격평가는 실제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평가와 관련된 제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최근 상당한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한다.

4)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사용연수(耐用年數,수명)가 유한한 모든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용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자산은 이를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그 수요의 변동이나 기술적 진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유용성 또는 가치가 점차 감소

되어 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재정상태와 재정성과에 반영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효익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배분과정이다. 원가배분하는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율법, 종합상각법, 대체법 등이 있다.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노후화, 기술적 진부성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5) 자산의 종류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과목은 단기간(1년기준)에 현금화(유동화)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즉 유동자산이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말한다. 반면에 고정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물리적 실체의 유무에 따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가)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은 미수지방세 및 미수금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즉 미수금은 조세징수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미수세금은 수익인식기준(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납기일의 미도래 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즉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당기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체납세금은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납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일 현재 징수되지 않은 세금 중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이다.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불납 결손처분 추산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미수세금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나)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과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기타투자자산 등을 포함한다.

회수가 불확실한 장기미수세금, 장기대여금 등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추산

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결손처분충당금은 장기미수세금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다)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목,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포함한다.

임목을 일반유형자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地自體 회계장부에 계상될 경우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장기간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여 유형자산에 표시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관리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건물 등으로 대체한다.

라)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및미술관, 동물원, 수목원및휴양림, 체육시설, 문화및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및연구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마)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한다. 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고정자산이다. ①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자산 ②유형자산에 비해 내용연수가 상당히 장기적인 자산 ③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인 지역사회 인프라적 자산. 예컨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물기반시설, 댐,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은 모든 시설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회기반시설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와 도시철도 등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쟁점 :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인식 및 감가상각 문제

- 취득가액의 현실적 측정가능성문제로 인해 복식부기도입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은 측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實益에 대한 회의론과 우리의 현실상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 산정이 힘든 점도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일부 현실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회계제도에서 사회기반시설(소위 사회간접자본)의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인프라자산)의 감가상각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자산)의 존립기반이 耐用年數까지 필요한 유지보수를 행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수명이 되기 전에 새로 갱신한다라는 리사이클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부칙 제3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규칙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론상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 효익이 불확실한 법적 경제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법률상의 권리 및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산업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부채

1) 부채의 정의와 인식

부채(liabilities)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과 지방채증권뿐 아니라 예산회계에서 인식하지 않는 미지급채무(미지급금, 예수금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미지급채무나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은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부채로 발생주의회계에서 나타나는 과목에 속한다. 채무부담행위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일종으로 보지만 복식부기회

계에서는 구체적인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2) 부채의 평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이란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지방채증권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하고, 발행차금은 증권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액(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부채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부채를 말한다.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

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우발상황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예컨대 교통사고발생 시 도로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급보증 채무 등이 있다. 우발상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및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우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부채의 종류

부채는 장래 변제해야 할 채무인데, 일반적으로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이 예정된 경우 유동부채로, 1년 이상의 기간 후에 상환이 예정된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한다.

가)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다.

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액을 말한다. 회계에서는 주로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계상하며 비용을 지출하고 대금이 미불된 것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였다가 해당 목적에 지급하는 모든 예수금액으로 한다. 예컨대 세입세출의 현금과 地自體의 國稅수입, 시·군의

道稅수입 등은 차변은 현금·예금 資産으로, 대변은 예수금인 유동부채로 잡았다가 반환하면서 정리한다. 시·도에서 받은 징수교부금, 재정정보전금은 수익으로 잡는다.

나)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장기미지급금 등이다.

장기차입부채가 만기가 가까워져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유동성장기차입부채라는 유동부채에 계상하게 된다.

다)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를 말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선수수익, 장기예수보증금 등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연간 300일 이상 상시고용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순자산

1) 순자산의 정의

이론상 純資産(net asset)은 후세대로 이어지는 공유재산의 실질가치를 의미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이다. 정부회계의 순자산은 기업과 같은 자본금 또는 持分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개념을 사용한다.

순자산의 증감사항은 재정상태보고서와는 별도의 재무제표인 순자산변동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1.1 - 12.31) 기간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순자

산의 증가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 등이 해당된다. 순자산의 감소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 순자산의 감소 등이 해당된다.

2) 순자산의 종류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에서 당해 시설투자재원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으로 한다.

일반순자산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은 순자산으로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한다.

□ 쟁점 :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資本的)국고보조금 등 처리문제

- 資本(投資)的 성격의 국고보조금, 분담금, 부담금, 기부금 등이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있는 경우 건설한 고정자산을 재정상태보고서에 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액을 순자산에 계상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즉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가운데 그 성격이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특정된 자본적보조금은 경상적보조금과 구분하여 자산적 거래로 보아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그 증가내역을 표시하고, 경상적보조금은 운영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정자산중 국가 등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국가의 자금에 의해

건설한 고정자산이고 당해 자치단체의 부담은 없는 부분이다.

<표 3> 결산시점의 재정상태보고서(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과 목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금	공기업	내부거래	계
자산	유동자산	100,797	252,575	16,654	59,762	-	429,788
	투자자산	337,861	1,089	581	9	330,877	8,663
	일반유형자산	263,581	38,606	-	13,792	-	315,979
	주민편의시설	159,724	2,125	-	-	-	161,849
	사회기반시설	939,081	14,224	-	278,969	-	1,232,274
	기타비유동자산	321	-	-	4,029	-	4,350
	자산총계	1,801,365	308,619	17,235	365,561	330,877	2,152,903
부채	유동부채	26,770	163,943	-	6,911	-	197,624
	장기부채	102,283	43,617	-	48,275	-	194,175
	부채총계	129,053	207,560	-	55,186	-	391,799
순자산총계		1,672,312	101,059	17,235	301,375	330,877	1,761,104
부채및순자산총계		1,801,365	308,619	17,235	356,561		2,152,903

6. 재정운영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는 일정기간(회계기간)동안 얼마나 노력했나 그래서 어떤 성과(성적)를 얻었나를 표시한다. 즉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활동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차변에 표시하고, 모든 수익을 대변에 표시하는 것이다. 재정상태보고서와 함께 財務諸表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정부회계는 공공회계가 지니는 특성상 민간기업과 달리 수입과 지출이 개별적인 연계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표 4>처럼 기능별로 표시하고,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부록참고)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한다.

<표 4> X市 재정운영보고서(2007년 1월 1일-12월 31일)

(차변)

(대변)

비용(기능별)	2007	2006	수익	2007	2006
- 입법 및 선거			- 자체조달수익		
- 일반행정			- 정부간이전수익		
- 교육 및 문화			- 기타수익		
- 사회보장					
.....					
- 운영차액					

가. 비용

1) 비용의 정의와 인식

비용이란 이론상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로 정의되고 있다. 다만, 관리전환 등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현금의 지출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소위 “발생주의”). 예컨대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으나 수혜자,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교부금 등 이전지불해야 할 금액은 비용으로 계상한다.

2) 비용의 종류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단,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한다. 성질별 분류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기능별 분류는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 등으로 구분한다.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복식부기회계에서 필요한 과목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 등이다.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기타 비정규직원, 상용인부 등 고용인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인건비는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의급여, 퇴직급여및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나)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운영비는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유지보수비, 교육훈련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보험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외주용역비, 이자비용, 회의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행사비, 의회비, 잡비 등을 포함한다.

다) 정부간이전비용 : 정부간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간이전비용은 타자치단체보조금, 징수교부금비용, 조정교부금비용, 재정보전금비용,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기관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라) 기타이전비용 : 기타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금전이나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이전비용은 민간사회복지지원금, 민간인장학금, 주민자치활동지원금, 민간행사위탁비, 민간인행사참가비, 민간인포상금, 민간인보상금, 민간인배상금, 민간의료시설지원비, 민간사업위탁비, 운수업계보조금, 이차보전금, 일반민간지원금, 출연금비용, 사회단체보조금, 예비군운영보조금, 국가부담금비용, 국가위탁부담비용, 지방공기업전출금, 국제기관지원부담금, 해외단체등지원금, 산하단체운영비, 기타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마)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기타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매각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감액손실,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상각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합리적 추정에 따른 비용이다. 예컨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및 미수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등이 있다. 현금의 지출이 없는 비용발생이다.

나. 수익

1) 수익의 정의와 인식

수익이란 이론상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로 정의되고 있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현금의 수입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실현된 모든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소위 “실현주의”). 예컨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수익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한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치단체부과방식의 조세수익은 자치단체가 부과 고지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한다.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한 세액의 경우에는 일단 당해 세금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연부연납이나 분납으로 납기가 이연된 금액은 미수세금으로 계상한다.

2) 수익의 종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가) 자체조달수익 :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하는데, 예컨대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다.

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데, 예컨대 국·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 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및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한다.

나) 정부간이전수익 :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포함한다.

다) 기타수익 : 기타수익은 상기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예컨대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 쟁점 :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구분문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서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증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도 같은 맥락이다.
- 따라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하다는 것이다. 즉 經常的 성격의 지방

교부세수익, 경상적 보조금수익, 경상적 기부금 등은 재정운영보고서 수익란에 표시되고, 資本(投資)的 성격의 국고보조금, 분담금, 부담금, 기부금 등은 재정상태보고서에 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액을 순 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 운영차액

「이익」이란 용어는 공공회계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대신 「운영차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다.

정부운영은 단순한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주민복지향상 등 공공성을 추구 하므로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액만으로 자치단체의 운영성과를 판단하기 는 어렵다.

<표 5> 회계기간의 재정운영보고서(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과 목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금	공기업	내부거래	계
수익	지방세수익	139,146	-	-	-	-	139,146
	경상세외수익	19,186	60,438	597	61,686	-	141,907
	임시세외수익	23,605	9,908	112	2,191	1,317	34,499
	정부간이전수익	223,805	5,828	2,090	72	7,572	224,223
	계	405,742	76,174	2,799	63,949	8,889	539,775
비용 (성질)	인건비	102,733	559	-	-	-	103,292
	운영비	75,063	3,338	54	47,382	-	125,837
	정부간이전비용	8,300	1,720	600	-	8,889	1,731
	기타이전비용	105,566	204	1,336	-	-	107,106
	기타비용	14,227	54	-	10,510	-	24,791
비용 (기능)	입법및선거	2,516	-	-	-	-	2,516
	일반행정	69,259	-	667	-	900	69,026
	교육및문화	24,420	-	-	-	-	24,420
	보건및생활환경	33,620	-	792	57,892	523	91,782
	사회보장	76,886	1,844	73	-	1,920	76,883
	주택및지역개발	5,010	160	5	-	2,804	3,092
	농수산 개발	7,125	-	-	-	-	7,125
	지역경제개발	11,863	-	292	-	100	12,055
	국토자원보존개발	42,920	-	160	-	2,347	40,734
	교통관리	11,851	1,990	-	-	1,016	12,825
	민방위관리	1,003	-	-	-	-	1,003
	기타	19,415	1,881	-	-	-	21,296
	계	305,889	5,875	1,990	57,892	8,889	362,757
운영차액		99,853	70,299	809	6,057	-	177,018

제3장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시범운영기관인 부천시가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한 효과로는 종합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초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net assets)의 종합관리로 재무상태와 수익, 비용의 파악으로 시정운영결과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원가관리,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과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산과 부채의 관리강화로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이 증대되고 연간 자산취득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3가지 측면 즉 ①지방재정정보측면 ②지방공무원측면 그리고 ③주민측면에 초점을 맞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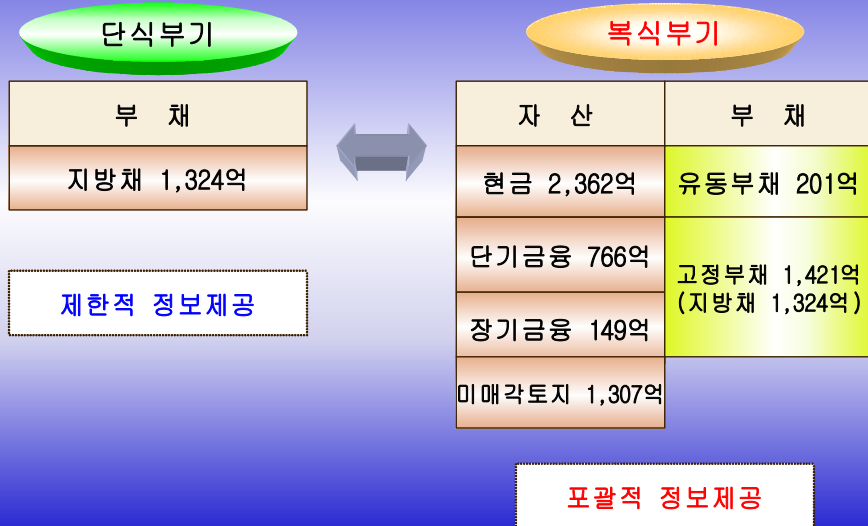
1. 지방재정정보의 다양화 및 구체화

1) 제한적 정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정보제공

예컨대 단식부기 결산에서는 단편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재정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부채규모와 함께,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자산과 유동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고정자산중 투자자산의 장기금융상품 등 재정정보를 균형되게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분석이 가능하게 된다.⁴⁾

4) 우리나라 행정현장의 문제점중 하나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전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약하고 자기 소관업무외에 타부서의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비교적 무심하다는 것이다. 즉 조직 전체의 성과 제고에 필수적인 부서간·민관간 networking과 communication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종합적 재정상황 파악 가능



2) 자산 관리능력 향상

(1) 대형사업(종합운동장 등 장기계속사업)의 총 투자금액 즉시 파악가능

지금까지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다년도에 걸쳐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최초 토지보상부터 준공까지 사업관련 예산이 여러 비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준공시점에 총 투입금액과 직·간접원가 파악이 어려웠다. 즉 현재의 예산과목의 경우 장기공사 진행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민간행사실비보상금, 국외여비 등 10개 이상 과목에 예산이 나누어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 도입되면, 준공과 동시에 총 투자금액과 직·간접원가 파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성과측정과 경영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보유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내역 즉시 파악가능

단식부기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공사시행시 현금지출만이 기록될 뿐 공사완료시까지 자금지출에 대응하여 공사시설물이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이에 공사시설물의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가치를 알 수 없으며 공사완료후에만 시설물대장에 별도로 기록되기에 관리가 어렵다. 지금까지 소유자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과소의 협조를 얻어야만 파악이 가능하였다(약2-3개월 소요).

복식부기는 자금의 지출에 대응하여 공사완성 이전이라도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대응된다. 또 회계 결산일에 자산의 평가가 이뤄지므로 자산의 현재가치의 반영이 가능하다. 건설중인자산 관리로 진행중인 각종 공사의 총투자비(선급금, 기성금, 토지구입비, 손실보상영업권보상, 감독관여비, 준공금 및 부대비용 등)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재무제표 외에 별도로 보충정보와 주석 등에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총괄적인 관리와 함께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즉 검수시점에 자산취득 및 매각 등의 변동사항이 현장에서 입력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으로 자산관리 통제가 이루어져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3) 감가상각을 통한 실제 자산가치 파악 등 시설자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건물, 비품, 차량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자산에 대해서도 사용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통해 결산서에 표시되는 자산의 가액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각을 통해 비용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자산의 가치를 현재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 자산의 감가상각을 재정운영보고서상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항목을 운영수지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

5)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 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자산의 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⁶⁾

(4) 재고자산의 운영으로 잠재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파악 가능

토지구획사업 과정에서 발생하여 현재 매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지, 상가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봉투 등을 재고자산으로 별도 표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의 예산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의 개념은 없었으며 별도의 통계관리에 의해서만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물품 및 비품 등 각종 자산관리의 적정화

현 제도는 자산관리와 예산회계 관리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식부기 제도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및 자산관리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용됨으로써 정보의 상호검증, 회계처리와 연계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복식부기는 모든 자산의 획득과 변동사항이 총계정원장에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록되며 구입시 현금지출에 따르는 물품 증가가 장부상 대응되어 결산시에는 자산의 현재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6) 자금관리 효율화노력 평가

현행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으로는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를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입이자/금고평

6) 뉴질랜드 재무장관 R. Douglas가 1995년 “한국정부가 발생주의를 도입하였더라면 자산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성수대교 붕괴를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말은 발생주의 회계가 시설·자산의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회계제도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매년 감가상각 등의 자산재평가로 자산가치의 실질적 증감을 파악 계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가상각분으로 투자를 함으로서 자산가치를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는 등 스스로 재정운영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잔)지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수입이자 측정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기간손익개념이어야 하는데, 현행 현금주의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에서는 상기 지표를 활용해 전 地自體의 자금관리 효율성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이자는 현금주의 아닌 발생주의가 적용된다. 예컨대 2006.3-2007.2(1년) 정기예금이라면, 만기전인 2006.12에 현금주의에서는 계상하지 않았던 수입이자(미수수익)를 발생주의에서는 계상하게 한다.

(7)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관리

투입된 금액을 단순 비용으로 처리치 않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관리한다.

3) 채권·채무 관리능력 향상

(1) 보증금 및 장기융자금 등 파악가능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의 보증금적 성격의 자산은 재무제표에서도 자산으로 계리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산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보증금 등의 경우 지금까지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융자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현재는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여 자료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나, 복식부기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정자산인 장기융자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무담당자의 관심에 따라 별도의 작업에 의거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재무제표에서 총괄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2) 미수채권의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도별 자료생성이 가능하다. 미수채권(시기미도래인 미수 세금·세외수입과 체납 세금·세외수입)과 수익의 현년도와 전년도 구분이 별도의 작업없이 검색가능하다. 따라서 세입관리 특히 체납관리와 수익관리능력이 향상된다.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추정할 수 있다.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재정운영보고서상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항목을 운영수지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3) 정기예금, 적금 등 예상 이자수입 계상

예금·적금 등 예치금에 대한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실제 현금수취이자와 함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또한, 예·적금의 경우 예상만기를 고려하여 재무제표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장단기 재정자금운영 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지방채 관리 효율화 및 부채 실제규모 파악가능

단식부기는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부채가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 세입세출결산서상에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서 자산과 부채의 비교에 의한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한데 반해, 복식부기는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재산의 증감변화도 기록·계산되기에 보다 정확한 채무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재무제표를 이용하기에 재정상태 파악이 용이하고 또 적절한 발행비용 및 이자비용 등을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별로 비용 인식되므로 기간별 수익비용 측정이 가능하다.

지방채 승인과 실제 자금수입과는 기간적 차이가 발생하며 그 관리는 대체로 승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복식부기 도입후에는 실제 징수결의한 금액으로 변동관리된다. 그리고 부채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물품검수, 공사준공·기성검사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채로 계상하며 또한, 1년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의 퇴직금지급 예상액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여 고정부채에 표시하는 등 지급의무가 있는 자치단체 전체 부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단식부기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보증채무에 관한 정보가 재무보고서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다.⁷⁾

4) 결산정보의 신속 제공과 다양하고 비교가능한 재정분석

단식부기는 매 회계연도 출납기간 폐기 이후 결산완료까지 약 3개월 소요된다. 결산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산을 통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기가 어렵다. 복식부기는 결산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유용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므로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 현재 회계연도 단위로 연 1회만 결산하고 있는 것을 분기결산, 월단위 결산도 가능하다.

현재의 예산회계 결산은 “예산 - 지출 = 잔액”방식으로 이루어져 決算이라기 보다는 精算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약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외 발표시에도 의회와 시민단체를 이해시키기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된 후에는 기존 재정분석의 장점과 함께 발생주의의 특성에 따른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재정건전성, 효율성, 탄력성에 대한 측정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위기의 조기진단, 재정정책의 변

7) IMF는 한국예산에 정부보증채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에 따르는 효과분석 등 다양한 분석에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회계에 적합한 재정분석모델 및 분석기법이 개발되면 현재보다 좀더 심화되고 다양성있는 재정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소위 '관리회계' 측면).⁸⁾ 즉 별도의 작업없이 년도별 증감 내역을 통계상으로 활용하고 시계열에 의한 추계분석과 비율분석이 가능해져 장,단기 재정예측 및 재정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예컨대 주요회계과목별 인건비, 미수세금, 운영비, 고정자산 등의 세부내역이 전년도와 현년도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현재의 재정 운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동일규모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의 운영상황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결국 알기 쉽게 요약된 결산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들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이해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일일결산의 종합정보제공 및 연계성강화

기존 예산회계에서 일일결산은 세입부서·세출부서 및 자산관리취득을 담당하는 개별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다. 복식부기도입 후에는 기존의 일일결산 이외에 추가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내용도 일일관리됨으로서 자산의 증감내역과 세입세출의 증감내역이 상호연계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일결산이 가능하다.

6) 이중확인장치를 통한 자기검증과 재정행위의 투명화

복식부기회계가 예산과목-관리과목-회계과목으로 연계되어 있어, 복식부기팀에서 관리과목과 회계과목 확인시 세출예산과목의 오류를 찾을 수 있는 이중확인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세외수입 경우 세입징수부와 복식부기세입 연계시스템간의 연계강화로 실과소별·세목별 징수결의금액과 수납금액의 차이

8) 회계처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무회계(재무상태, 운영성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와 관리회계(원가관리 및 성과관리 등을 통한 중장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로 구분된다.

발생으로 복식부기팀에서 징수결의누락을 발견할 수 있다.

(예) 단식부기의 경우 세입이 현금으로 징수시에 수입으로 회계처리 되는 반면, 복식부기는 세입의 부과와 징수가 대응되어 처리되며 또 부과와 동시에 미수내역도 정확히 회계처리 된다.(세금부과, 징수, 미수납액등이 순차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므로 회계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과태료 수납누락 발견

☞ 정상적인 부과·수납 거래시

- 징수결의(부과) 분개 : (차변)미수과태료 45,000 (대변)과태료수익 45,000

- 현금수납시 분개 : (차변)현금 45,000 (대변)미수과태료 45,000

☞ 세입담당자가 사무착오로 부과과정이 누락되고 현금수납만 장부에 기록될 경우
(차변)현금 45,000 (대변)미수과태료 45,000

즉 징수결의없이 현금만 수납시에는 미수채권 발생없이 현금이 증가하고 미수과태료가 감소하므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 재무제표에 오류가 나타남으로 자기검증기증이 단식부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최종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의 미수채권에 마이너스가 발생됨.

(예) 세외수입의 미징수결의된 입장료수입이 재정상태보고서에 -3천만원으로 기재 되어 원인규명 작업실시

☞ 정상적인 부과 수납시 분개

- 징수결의시 : (차변)미수입장료 30,000,000 (대변)입장료수익 30,000,000

- 현금징수시 : (차변)현금 30,000,000 (대변)미수입장료 30,000,000

☞ 징수결의 없이 현금만 입금시

· 재정상태보고서 미수금의 미수입장료 -30,000,000

· 재정운영보고서 입장료수익 30,000,000

즉 복식부기에서는 징수결의시 미수입장료와 입장료수익이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되고 현금수납시 현금증가와 미수입장료가 감소되어 체계적 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서 나타난 오류를 즉시 발견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에서는 원인행위없이 현금만 수납되므로 징수결의누락분 파악이 어렵다.

7) 국제회계기준과의 적합성 확보

우리나라는 IMF, OECD등 국제기구로부터 발생주의회계제도에 의한 재정 통계자료 작성을 요청받고 있다. IMF는 정부재정통계에 대한 일관성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정부재정통계지침(GFS: Manual on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을 규정하고 있다. GFS는 기본적으로 정부활동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거시적관점에서 평가·분석하는 통계분석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도에 개정된 지침에서는 발생주의회계방식에 의거하여 정부대차대조표(government balance sheet)와 정부운영표(government operations table), 현금수입지출표(statement of source and uses of cash), 기타경제적가치변동표(statement of other economic flows)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는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회계제도이다. IMF GFS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 보다 훨씬 종합적 세부적으로 분류·구분되어 있다.

2. 공무원의 원가의식 함양 등 경영적 감각 양성

현금주의에 입각한 현행 단식부기제도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收支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금주의로 처리하므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수익과 비용(원가)의 인식이 없다. 또한 자산·부채·순자산과 관련된 자본적 거래와 수익·비용과 관련된 수익적 거래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혼동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收支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

재정상태가 실질적(발생기준)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알 수 없으며, 실제보다 과대·과소평가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사업별 원가를 정확히 모르니 공무원들에게 원가의식이 생길 리 없다.

(예) 경영수익사업 경우 회계마인드 및 원가의식의 부족으로 사업의 투자 및 收支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익적 수입(수익)·지출(비용)과 자본적 수입·지출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 地自體에서 작성된 경영수익사업 자료를 보면 흔히 (수입-지출=수익) 산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수익-비용=이익 또는 손실) 산식이 맞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감가상각비, 투자자산의 기회비용 등을 대부분 수지상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회계간 지원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별 경영성과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업별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보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인식이 없기 때문에 코스트절감을 위한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다.

(예) 세외수입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수수료 등이 법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으며, 인식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주민을 고객으로서 규정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이념을 공무원에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코스트의식 등 기업경영적 감각이 양성된다. 왜냐하면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입각해 수익과 비용(원가)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식하게 되면, 원가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와 주민참여 촉진

주민에 대해 기업회계수법을 활용한 풍부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가할 의욕을 촉진시킬 것이다.

1)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주민들이 보다 궁금해 하는 주민의 알 권리(눈높이)에 부응하는 재정분석 지표의 개발·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해 개발되는 각종 재정분석지표를 예시한다면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공무원인건비, 총채무액, 단기채무액, 장기채무액 등). 체납세(단기·장기)증감율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본적지출과 경상적경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보제공

예산을 주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예컨대 도로개설, 수해방지시설 등)인 자본적 지출에 사용했는지, 소모성 경비(예컨대 공무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즉 자본적인 투자지출(재산상태 보고서의 고정자산항목)과 경상비용지출(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항목)에 대한 정보를 구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본적지출의 결과인 유형자산을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로 나누어 투자금액의 증감현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주민편의시설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공연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1회계년도 동안 투자액 증감을 별도의 작업없이 재무제표로 쉽게 파악 가능하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와 도로부속설비, 폐기물부속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황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또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을 회계제도측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자율권확대와 동시에 재정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산하기관 및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경영성과를 연말결산에 반영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하철공사, 의료원, 개발공사, 제3섹터 등에 대한 많은 출자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경영결과(흑자 또는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결산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사 등 출자기업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함께 고려되지 못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정부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복식부기도입 후에는 출자금 등 투자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결산시 자치단체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는 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해져 정책결정자 및 재정책임자에 대한 회계의 책임성이 증대된다. 즉 재무제표의 출자금과 기타수익 등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4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과정의 장애요인

복식부기제도는 정부예산과 회계를 포괄하는 재정인프라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므로 제도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주민에게 제공·공개하여 회계책임성의 확보 및 거래의 이중성에 의한 자동검증원리로 오류방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확보로 재정투명성이 강화되며, 발생주의에 의한 비현금거래를 포함하여 예산집행의 결과를 제공하여 정부성과측정을 위한 기반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업무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므로 추가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자산·부채 실사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기초 가액을 확정하는 일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기초재정상태보고서와 개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자산·부채의 기초가액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의 확보 문제가 수반된다. 기초가액의 오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하는 회계정보 전체의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1. 도입비용 문제

전문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막대한 전산개발비용, 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교육수요 등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재무보고서 작성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나 회계사에게 외부위탁시 수수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 도입에 대한 저항

아직 도입초기로 일반직원들의 경우 복식부기 도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계속해왔던 현행 회계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이론처럼 쉽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복식부기로의 전환은 혁명과 같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기업도 복식부기를 사용하지만,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재정에 복식부기를 도입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장기간 고착화된 단식부기방식에 익숙해진 관행과 “영리조직은 복식부기가, 행정기관 등 비영리조직은 단식부기가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에 따른 행정조직 내부의 저항이 예상외로 심각할 수도 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의 관심부족은 업무담당자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를 기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3. 취약한 전문성 문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직 공무원이 3~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적은 인력으로 계약, 지출, 결산, 물품관리, 검수, 검사 등 회계업무뿐 아니라 잡다한 지원업무까지 맡고 있다. 게다가 2~3년마다 보직이 변경되어 신규인력으로 교체됨으로써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한시적 조직인 복식부기팀 경우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며, 도입 초기인데도 전담부서인 복식부기팀을 아예 해체해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복식부기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로 장기간 업무 습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4. 자산평가의 어려움

특히 기초(개시)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⁹⁾ 이는 자산평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래전에 취득한 도로, 건축물,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경우 조사 및 계상에 어려움이 있다.

자산평가가 부실하면 분식결산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산평가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우려

주민들의 “알 권리”충족은 주민참여 의욕을 촉진시킨다. 재정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사건건 따지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게 병이다”란 말도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현금주의에 입각한 세목별 수입정보만 알았지만,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발생주의에 입각한 세목별 ①지방세수익 ②미수세금 ③체납세금 ④장기미수세금 ⑤장기체납세금 등 5가지 정보를 알게 된다. 이렇듯 재정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민들이 많이 알게되면 사사건건 따지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기에 재정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복식부기 도입이후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2항)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발전방안

1. 공감대 형성 및 전문인력 확보 노력

복식부기관련 교육이수경험과 도입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선결과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대상은 공무원 교육원 회계과정교육생 117명으로 이중 112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95.7%이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유효 응답자중 39명이 응답하여 36.4%, “공무원 교육”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31.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	39	36.4
법령, 법규 정비	12	11.2
기관장의 관심도	10	9.3
자산의 평가	9	8.4
관계 전문가의 역할	3	2.8
공무원 교육	34	31.8
합계	1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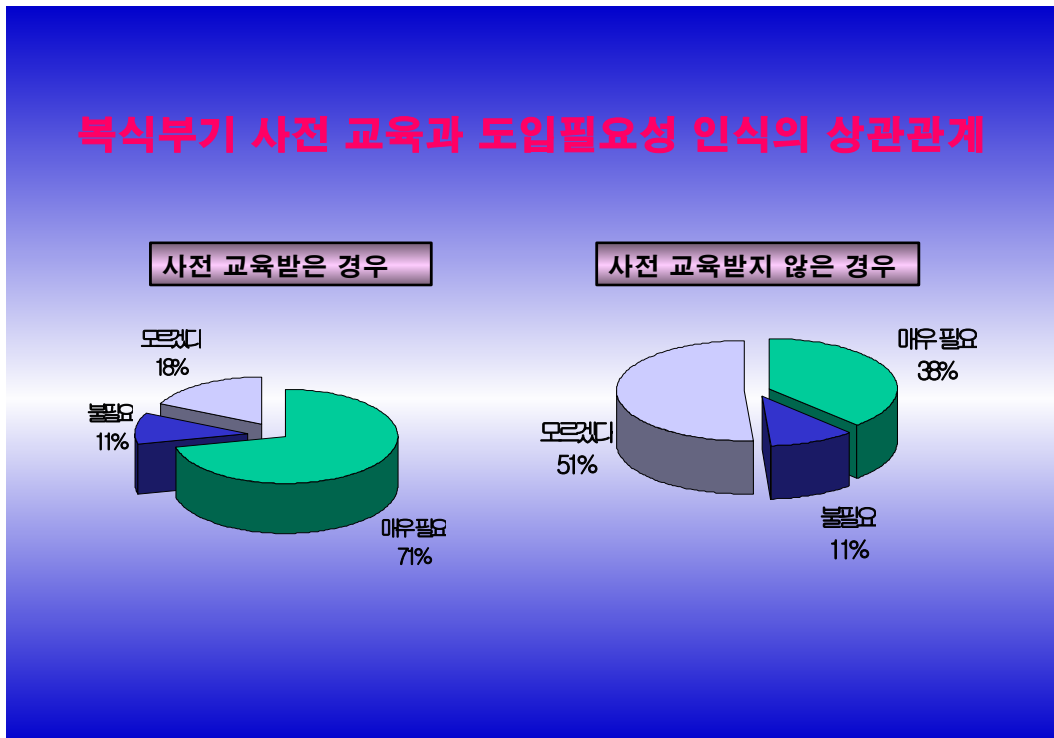
그런데 복식부기관련 교육이수경험과 도입필요성 인식이라는 두 변수간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복식부기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복식부기도입이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교육경험 있다	빈도	20	3	5	28
	%	71.4%	10.7%	17.9%	100.0%
교육경험 없다	빈도	32	9	43	84
	%	38.1%	10.7%	51.2%	100.0%
전체	빈도	52	12	48	112
	%	46.4%	10.7%	42.9%	100.0%

상관계수

Pearson 상관계수	.306
유의확률 (양쪽)	.001
N	11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현재 도입타당성 및 도입내용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복식부기 관련 교육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어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복식부기의 회계적 이론은 매우 높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모든 공무원이 복식부기를 일상업무처리의 기본원리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가 도입하는 복식부기는 공무원이 분개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이 처리하는 자동분개처리시스템으로서 공무원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산회계만 알면 활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어 복식부기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리자집단의 추진력 확보와 실무자급의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의 운영능력이 성패의 관건이기 때문에 관리자급의 인식 변화와 실무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하에 향후 회계제도 개혁의 주체가 될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전산시스템 운용능력 제고

지난 2008. 1. 1.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종전에 개별 운영하던 예산회계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새로이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예산, 수입, 지출, 자금, 계약, 재무결산, 자산, 부채 등 지방재정의 총체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재정통계와 분석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치단체별 건전재정의 경쟁력과 국제신인도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아직은 운용초기단계이므로 운용능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는 결산총평에서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회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회계」 과목이 포함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⁰⁾

4. 복식부기제도 도입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활용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정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운영은 복식부기제도 도입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장의 관심 및 교육경험이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도입노력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10)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정부회계」 및 「NPO회계」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장 결 론

선진국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하나같이 예산회계제도를 과감하게 개혁 정비하는 시도를 단행하였다. 이는 성과주의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예산회계 제도의 구조개선에 착수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환경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를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복식부기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식변화와 교육, 훈련,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은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없이는 추진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역시 선진국의 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우선 충분한 시험적용 및 제도이행 준비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문수(2004.7), “정부회계 처리사례 및 통합재정”, 「복식부기회계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교재
- 이상운·장권(2002),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 이효·이상용·이삼주(2002.1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2001.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정립”, 「행정리더쉽 개발 & 정부회계실무(Ⅱ)」, 한국행정학회
- 정승모(2005),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효과", 자치인력개발원 2005년도 지방재정관리과정 개인과제
- 정윤한(2005),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논리와 과제”, 「복식부기의 이론과 실제」, 자치인력개발원 교재
- 최대규(2004.7), “부채 및 수익비용회계”, 「복식부기회계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교재
- 최대규(2004.7), “자산회계”, 「복식부기회계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교재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2005),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제1기 회계과정 분임연구보고서
- Mascarenhas. R. C.(1996), "Searching for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Interim Evaluation of Performance Budgeting in New Zealand," *Public Budgeting & Finance*.

(부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 348호, 2006.10.1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①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회계실체) ①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②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8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②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하되 내부거래를 빼고 작성한다.

③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재정상태보고서) ①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 ①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용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13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산의 분류)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에서 표시한다.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체육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및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및 무형자산(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에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재정운영보고서) ①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②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며,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

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9조(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행정활동과 관련한 비용산출을 위한 계산과 배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른다.

제30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제31조(자체조달수익) ①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세수익, 경상세의 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말한다.

②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 제5조에 규정한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③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말한다.

④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국·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말한다.

제32조(정부간이전수익)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교부를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을 말한다.

제33조(기타수익) 기타수익은 제31조와 제32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제34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현금흐름보고서) ①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현금흐름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37조(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순자산변동보고서) ①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순자산변동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기부채납으로 생긴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등을 말한다.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등을 말한다.

제7장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결산총평) ①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정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②서문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필수적인 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③주요특징사항과 필수적인 사항은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④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⑤재정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분석지표 및 재정통계자료를 말한다.

제41조(주석) ①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필수보충정보)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양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

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제 수익률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9조(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의 수정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말한다.

③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제35조 및 제56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 ③(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당해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회계	기타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회계	방산업별회계	내부거래	계	일반회계	기타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회계	방산업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 산																
I.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II.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III.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IV.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																
V.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																
VI.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자산총계																
부 채																
I.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II.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III.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																
부채총계																
순 자 산																
I.고정순자산																
II.특정순자산																
III.일반순자산																
순자산총계																
부채와순자산총계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운 영 보 고 서(기능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 특별 회	타 별 계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특별 회	방 업 기 별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특별 회	타 별 계	기 금 회 계	지 공 기 특별 회	방 업 기 별 계	내 부 거 래	계
I.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II.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수익																
국고보조금 수익																
...																
III. 기타수익																
회계간전입금 수익																
기부금수익																
...																
IV. 수익총계																
V. 비용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																
VI. 비용총계																
VII. 운영차액(IV-VI)																

【별지 제3호 서식】

현 금 호 림 보 고 서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지 공 기 회	방 업 기 회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지 공 기 회	방 업 기 회	내 부 거 래	계
I.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1.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2.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대여금의 회수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일반유형자산의 처분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대여금의 상환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차입금의 차입																
지방채증권의 발행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차입금의 상환																
지방채증권의 상환																
. . .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V. 기초의 현금																
VI. 기말의 현금(IV+V)																

【별지 제4호 서식】

순 자 산 변 동 보 고 서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특회	타별계	기금 회계	지공기특회	방업별계	내부 거래	계	일반 회계	기특회	타별계	기금 회계	지공기특회	방업별계	내부 거래
I. 기초순자산															
II. 운영차액															
III. 순자산의 증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에 의한 누적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IV. 순자산의 감소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에 의한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V. 기말순자산 (I+II+III-IV)															

【별지 제5호 서식】

재 정 운 영 보 고 서(성질별)

당해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과 목	당해연도(20××년)						직전연도(20××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계	지 공 특 회	방 업 기 별 회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특 회	타 별 회	기 금 회 계	지 공 특 회	방 업 기 별 회	내 부 거 래	계
I.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II.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																
III. 기타수익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																
IV. 수익총계																
V.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																
VI. 운영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																
...																
VII. 정부간이전비용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																
VIII. 기타이전비용																
민간사회복지 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																
IX. 기타비용																
X. 비용총계																
XI. 운영차액(IV-X)																

복 식 부 기

2008년 2월 일 인쇄
2008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기획지원부
집 필 : 지 방 혁 신 인 력 개 발 원
교 수 이 재 성
교 정 : 충 청 남 도 조 영 철
충 청 남 도 이 중 호
인 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TEL : (02) 426-4415
FAX : (02) 429-9562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매품>>

2008 공통교재
복식부기